

#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

2023. 2. 15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. 2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3. 1. 31.

다. 상정일자 : 제260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(2023. 2. 15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도시계획과장

### 가. 제안이유

이대역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, 분리되어 관리중인 도시철도 시설 일원화 및 기 결정 시 누락된 변전실 부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으로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되었음.

## 3. 검토의견 [신준호 전문위원]

□ 이대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

○ 위 치: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80 일대

- 내 용: 도시철도 시설 일원화 및 누락된 변전실 부지 포함 도시계획시설  
(도시철도) 결정(변경)
  - 도시계획: (도시계획시설)도시철도, (용도지역·지구)제3종일반주거지역
  - 면적/지목: 10,234.8㎡/도로 13필지(97.29%), 대지 1필지(2.71%)
  - 소 유 자: 국유지(7,798.4㎡, 76.19%), 시·도유지(2,436.4㎡, 23.81%)
- 추진경위
  - 1977. 12. 01.: 도시계획시설(고속철도) 최초 결정 A=3,400㎡ (건설부고시 제232호)
  - 1979. 09. 24.: 도시계획시설(고속철도) 변경 결정 A=5,000㎡(건설부고시 제349호)
  - 1980. 06. 05.: 도시계획시설(변전소 및 환기실) 최초 결정 A=1,567㎡  
(서울특별시 고시 제191호)
  - 1981. 04. 24.: 도시계획시설(고속철도) 지적 승인 A=5,000㎡  
(서울특별시 고시 제146호)
  - 1984. 05. 22.: 이대역사 개통 (서울대입구 ↔ 을지로입구)
  - 2022. 12. 19.: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(서울교통공사 → 마포구)

## 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- 주민공람 : 2023. 1. 5. ~ 2023. 1. 20. (15일)

## □ 검토의견

### 가. 제출 배경

- 본 의견청취안은 지하철 2호선 이대역사에 관한 사항으로 신촌로 180 지하 일원 마포구청으로부터 동측으로 약 4km, 서대문구청으로부터 남측으로 약 2.5km 지점에 위치하며, 대흥동 주민센터로부터 동측으로 약 300m 지점에 위치하고 서측은 신촌이대거리로 상권이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그 외 주변지역

은 저층주거지 및 아파트단지로 조성된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도시철도의 도시계획시설의 분리와 변전실 일부 부지의 누락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음.

#### 나. 주요 변경계획안

- 도시철도 시설 일원화를 위해 지정 고속철도의 도시계획시설인 변전소 및 환기실(감 1,567.0㎡)를 폐지하고, 도시철도 시설의 일원화를 위한 방편으로 기 결정시 누락된 변전실 부지 (증5,234.8㎡)를 포함하여 변경함.
- 「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‘고속철도’를 ‘도시철도’로 명칭 변경함.

※기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 제안설명 참고.

#### 다. 종합의견

- 대상지는 철도역사가 1977년 최초 결정되었으며, 변전소 및 환기실이 1980년 추가로 결정되어 2개의 시설이 결정되었음.

< 다음 페이지 계속 >

<그림 1. 정거장 최초 결정 고시문>

고 시 안

(사본)

건설부고시 제 23호

서울도시계획 운동장(서울운동장) 및 고속철도(지하철 순환선)를 다음과 같이 변경 및 결정하고 고시한다. 관계도서를 서울시장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7. 12. 1.

건설부장관

27	창천동	연세대 입구 토타리	18	170	3060
28	대현동	이화여대 입구 로타리	20	170	3400
29	아현동	경기공원 앞	22	170	3740

<그림 2. 변전소 및 환기실 최초 고시문>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91 호

도시계획시설(고속철도) 결정 및 지적승인

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고속철도)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

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(79.12.10)의 권한위임 사항에 외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

1980. 6.

서울특별시청

○ 고속철도(부대시설)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변전소 및 환기실	대흥동 2-77 의 10 필지	1,567 ㎡	

\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- 지하철 2호선 이대역사 건설당시 서울시 고시 제146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철도)로 고시되었으나 당시에 ‘지적승인도면’이 아닌 ‘철도역사 건

축도면' 으로 제출한 사항을 반영하여 실제 역사 현황과 맞지 않고 이대역사의 부속시설인 변전실 및 변전실 출입구, 환기구가 도시계획시설로 미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.

- 금번 변경은 이 같은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현황측량 결과 등을 반영하여, 서울교통공사가 이대역 전체를 도시철도시설로 원활하게 관리하고 도시철도 시설의 일원화 관리방안차원에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.
- 따라서, 이대역사의 시설 관리현황 등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와 도시철도시설의 통합적 관리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금번 안건 의결후 집행부에서는 마포구를 관통하는 전체 지하철 역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을 파악하여 현황과 달리 관리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검토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.

## [관계법령]

###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⑥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채택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